

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 안

의 안 번 호	623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7. 9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□ 제정이유

- 지역보건법('95. 12. 29 법률 제5101호) 및 동법시행령('96. 7. 13 대통령령 제15119호)이 전문개정되어 시행령 제2조에서 시지역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에 따라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위원회는 「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에 관하여 상의 및 자문에 응하기 위함」을 설치목적으로 함 (안 제1조)
- 위원회는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 및 보건의료계획의 수립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(안 제2조)
-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함 (안 제3조 제1항)

□ 조례안 : 별 첨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발췌첨부
- 예산관련사항 : 위원 참석수당 2,000천원(50,000원 × 20명 × 2회)
※ '97년 2회추경 반영
- 기타사항 : 경기도지역보건심의위원회운영조례(별첨)

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안산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2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3.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.

1. 지역주민
2.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의 임직원
3. 보건의료관련 전문가
4. 관계공무원

제4조(위원장등의 직무)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
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 부재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건의료 관련기관 및 단체 임직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,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.

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간사)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.

②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계장으로 한다.

제8조(위원의 해촉) 시장은 위원이 사망, 질병등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.

제9조(심의조정사항의 처리)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